

『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6월 13일

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방 성 봉

나. 제안이유

-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및 급속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조항 신설(안 제11조)
 - 시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.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○ 본 「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

-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및 급속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사업시행 시, 고령자들의 이동권 제약 및 박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하고, 기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면허반납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